공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탁]

공탁이란 공탁자가 공탁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채권자나 이해관계자인 공탁물의 수령인 등이 공탁물을 받게 하여 채무책임을 면하는 등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제(辨濟)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소에 공탁을 신청하는 방법, 공탁소에서 공탁물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물 회수방법 등 공탁신청절차에 따라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탁 1
1. 공탁의 이해 4
1.1. 공탁의 이용 4
1.1.1. 공탁할 수 있는 경우 4
1.2.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5
1.2.1.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5
1.2.2. 공탁기관과 관할 6
2. 공탁의 신청 10
2.1.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10
2.1.1. 공탁 신청절차 10
2.1.2. 공탁서 작성 및 제출 11
2.1.3.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13
2.1.4. 공탁물 납입 및 통지 15
2.2. 공탁서 열람 및 정정 16
2.2.1.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16
2.2.2. 공탁내용 변경 18
3. 공탁물 수령 20
3.1. 공탁물 수령 청구 20
3.1.1. 공탁물 출급·회수 요건 및 절차 20
3.1.2.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22
3.2. 공탁물 받기 25
3.2.1. 지급심사와 결정 25
3.2.2.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27

1. 공탁의 이해

1.1. 공탁의 이용

1.1.1. 공탁할 수 있는 경우

공탁의 이용목적

"공탁"이란

▪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대상 및 종류

공탁의 종류

▪ 공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시하는 손해배상금과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 담보(보증)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입니다.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일정한 경우에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해 하는 경우입니다.

▹ 몰취(沒取)공탁: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沒取)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탁입니다.

√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로부터 공탁물을 몰취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징벌적 성질을 가집니다.

▹ 혼합공탁 :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그 밖에 공탁의 종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

▪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은 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목적물 참조).

▹ 금전은 법률에 따라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우리나라의 통화에 한하며, 외국의 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 됩니다.

▹ 유가증권은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이전 등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또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그 밖의 물품은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보관하기에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를 공탁하기에 부적당하므로 변제자(辨濟者)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이 콘텐츠는 공탁의 종류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변제(辨濟)공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2. 공탁 이용자와 공탁기관

1.2.1. 공탁을 할 수 있는 자

공탁의 주체 및 능력

공탁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물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행위능력 참조).

※ 법령용어해설

· "공탁의 당사자 능력"이란, 공탁절차에 있어서 공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행위능력)

공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단서, 제6조 및 제8조).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부모이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제2항 본문 참조).

> **Q. 미성년자도 공탁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A.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에 관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스스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공탁을 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공탁신청을 할 수는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고객센터-FAQ)

▪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 따라서 가정법원이 공탁행위를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정하지 않았다면 피한정후견인 단독으로 공탁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제1항 참조).

▪ 피성년후견인의 공탁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참조).

▹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에 공탁행위를 포함시킨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조제2항 참조).

> ※ 법령용어해설
>
> ·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2조 참조).
>
> · “한정후견인”이란, 위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
> ·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9조 참조).

1.2.2. 공탁기관과 관할

공탁기관

공탁소

▪ 공탁에 관한 사무는 법원이 관장하거나 감독하며, 그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이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2조제3항 참조).

▪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공탁소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 “공탁소”란 등기소와 같이 별도의 관서(官署)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과 지방법원지원 및 시·군법원에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부서(통상 이를 “공탁계”라고 함)를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사무를 행하도록 지정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이 공탁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참조).

> ※ 전국의 공탁소 주소 및 전화번호는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소 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관

▪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본문).

▹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공탁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2조제1항 단서).

▹ 시·군법원 공탁관(供託官)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시·군법원에서 처리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과 화해·독촉·조정사건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및 제488조), 재판상 보증공탁, 가압류해방공탁(「민사집행법」 제282조), 소명에 갈음하는 몰취공탁(「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에 한정됩니다(「공탁규칙」 제2조).

▪ 이와 같이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공탁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는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시, 군 법원의 경우 법원주사보 이상) 등을 공탁관이라고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물(供託物)보관자

▪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 또는 「공탁규칙」에 따른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 이와 같이 공탁물 보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은행 또는 창고업자를 공탁물 보관자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기관).

공탁의 관할

관할공탁소

▪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1항).

▹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제1항 및 「공탁규칙」 제66조).

> ※ 법령용어해설

- 공탁사무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65조).

  ·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참채무(持參債務)란,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에서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으러 가는 추심채무(推尋債務)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당사자가 특히 추심채무로 결정했다거나, 법률로 추심채무로 결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출처: 법령용어사전 참조).

※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나,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공탁소에서 공탁을 수리(受理)함이 바람직합니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3호).

※ 「민사집행법」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

Q. 현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하는 변제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야 하나요

A. 채무이행지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채무 이행지입니다.

현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최후 주소지를 채무이행지로 봐야 할 것이므로 현주소가 분명하지 않은(不明)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고객센터-FAQ)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

▪ 공탁당사자가 관할공탁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직접 관할공탁소를 방문해서 공탁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금전변제공탁신청 및 공탁금지급청구에 관련된 공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1호).

▹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제2호 및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제3호가목).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1,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

※ 공탁의 관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관할 및 가능시간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탁의 신청

2.1. 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

2.1.1. 공탁 신청절차

공탁 신청방법

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 Q. 전자신청이 가능한 공탁유형이 궁금합니다.
>
> A. 금전공탁에 한하여, 모든 유형의 공탁신청(몇몇 경우 제외)과 총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탁사건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
> 다만, 출급 및 회수 청구시 첨부서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로 오셔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신청 사건에 대한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이의, 정정, 취하신청도 가능하며, 실물을 거래해야 하는 유가증권 및 물품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이 불가합니다.
>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고객센터-FAQ)

공탁 신청절차

방문공탁 신청절차

① 공탁 신청

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관할공탁소의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접수·심사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제출한 공탁서 중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등을 기재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일기일까지 공탁서를 제시하고 공탁물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 말미의 “영수증”란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공탁자에게 교부합니다. 이것으로 공탁이 성립되고, 교부받은 공탁서는 공탁자가 보관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방문공탁-방문공탁신청절차 참조 >

전자공탁 신청절차

① 전자공탁 신청

전자공탁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공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고, 공탁관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한 후 공탁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전자공탁 수리 및 통지

공탁관이 심사결과 공탁을 수리할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공탁을 수리한다는 내용과 사건번호 및 공탁물 납입기일, 공탁금 입금계좌번호 등을 기재한 납입안내문을 공탁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공탁물 납입

공탁자는 납입안내문에서 지정한 계좌로 납입기일 내에 공탁금을 납입해야 하며, 공탁금 보관자로부터 공탁금 납입이 확인되면, 그를 기점으로 공탁이 성립됩니다. 공탁자는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전자공탁-전자공탁신청절차 참조 >

2.1.2.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서 작성

공탁서 작성 방법

▪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단서).

▹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공탁원인사실

▹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공탁법원의 표시

▹ 공탁신청 연월일

> **※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1항).

·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무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2항).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1항).

·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본문).

√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3항).

·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4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1항).

· 계속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2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1항).

·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2항).

·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3항).

공탁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

공탁서 첨부서면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호).

▪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83조).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2호).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4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제2호가목(2) 및 제4호가목(3)).

Q.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지급청구의 교차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유관대상 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고객센터-FAQ)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의 반환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2항).

※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 >에서는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과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1.3. 공탁심사와 이의신청

공탁관의 공탁 심사

공탁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공탁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1통을 공탁자에게 내주어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자에게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1항).

- 공탁을 수리한다는 뜻
- 공탁번호
- 공탁물 납입기일
-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뜻

▪ 공탁관이 위에 따라 공탁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주요사항을 전산등록하고, 공탁물보관자에게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본문).

- 다만, 물품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에게 전송하는 대신 공탁자에게 공탁물품납입서 1통을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2항 단서).

▪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공탁신청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불수리결정등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 **Q. 전자공탁한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수리/불수리/인가)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A. 신청인이 사전에 동의한 방식에 따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하여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
> 전자공탁 사건에 대한 공탁관의 결정사항은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고객센터-FAQ)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공탁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 ※ 항고(抗告)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4. 공탁물 납입 및 통지

공탁물 납입절차

공탁물의 납입(納入)

▪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공탁물보관자는 공탁서에 공탁물을 납입받았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어 줍니다(「공탁규칙」 제27조 본문).

▪ 공탁자가 공탁물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그 수리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공탁규칙」 제26조제3항).

계좌입금에 따른 공탁금 납입

▪ 공탁관은 금전공탁에서 공탁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1항).

▪ 계좌입금으로 공탁금이 납입된 경우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 납입된 사실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2항).

▪ 공탁관은 공탁서에 공탁금이 납입되었다는 뜻을 적어 공탁자에게 내주거나 배달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공탁규칙」 제28조제3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하여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1항).

√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공탁서를 출력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8조제4항).

> Q. 계좌이체를 이용한 공탁금 지급이 가능한 은행은 어디인가요
>
> A. 지급신청서 작성시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10개의 보관은행 내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
> 따라서 아래 10개 은행 중 계좌가 존재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 10개 보관은행 : 신한, KEB하나, 우리, 농협(농협중앙회만 가능), SC제일, 전북,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은행(이 외 은행은 공탁금 보관업무를 취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통지서 발송

공탁통지서의 발송

▪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제3항).

▹ 공탁자가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외국주소로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수신인란에 로마문자(영문)와 아라비아 숫자로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67조제1항).

▪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7조 및 제29조제1항).

▹ 공탁통지서에는 공탁번호, 발송연월일과 공탁관의 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9조제2항).

2.2. 공탁서 열람 및 정정

2.2.1. 공탁서 열람, 증명청구 및 정정

공탁서 열람과 증명청구

공탁서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

▪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탁관에게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1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2항).

√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3항).

> Q.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 A. 열람신청(사실증명청구)의 신청은 당사자(공탁자, 피공탁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공탁물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그러나, 이미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한 자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므로 열람, 사실증명발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단, 이해관계인의 주민번호가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은 공탁소를 방문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 공탁관계 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를 하는 사람은 열람신청서나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4항 전단).

▹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9조제4항 후단).

< 방문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전자열람 및 증명청구 절차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신청

▪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탁서 정정(訂正)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 또는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6조).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

▪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서 정정신청서 2통과 정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2항).

▸ 공탁서 정정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

√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59조제2항).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전단).

√ 이 경우 다른 공탁서 정정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3항 및 제22조 후단).

▹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 피공탁자의 주소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6항 및 제23조제1항).

▪ 공탁관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내줍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4항 전단).

< 공탁서 정정신청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2.2.2. 공탁내용 변경

담보물 바꾸기

담보물 변경

▪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본문).

▹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단서).

대공탁 또는 부속공탁 청구

청구서 제출

▪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 법령용어해설

· 대공탁: 공탁한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대신하여 보관함으로써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

· 부속공탁: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하였을 때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서 공탁소가 그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전의 공탁유가증권에 부속시켜 하는 공탁으로 기본공탁의 효력을 그 이자 또는 배당금에 따른 금전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치도록 하는 공탁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공탁용어)

청구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는 서면

▪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전단).

▹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4항 및 제22조 후단).

▪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 공탁관이 대공탁이나 부속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줍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 대공탁과 부속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

3. 공탁물 수령

3.1. 공탁물 수령 청구

3.1.1. 공탁물 출급·회수 요건 및 절차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청구

공탁물 출급(出給) 및 회수 청구방법

▪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1항).

▹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출급 및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본문).

√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단서).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요건

공탁물 출급 요건

▪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그 권리를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9조제1항).

▪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물 회수 요건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민법」 제489조제1항).

▹ 그러나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89조제2항).

▹ 공탁소에 대한 승인이나 통고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이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1항).

▹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9조제2항).

▪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3. 9. 13.자 2013마949 결정>
>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참조).
>
> 따라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탁물 회수 제한

▪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유로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합니다(「공탁법」 제9조의2제1항 본문).

-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공탁법」 제9조제2항제1호)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공탁법」 제9조제2항제3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제1항 단서).

-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공탁물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

▪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공탁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제3항).

-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해서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1호나목).

Q. 공탁금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시효의 기산일은 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공탁자가 회수 원인이 있어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10년 내에 회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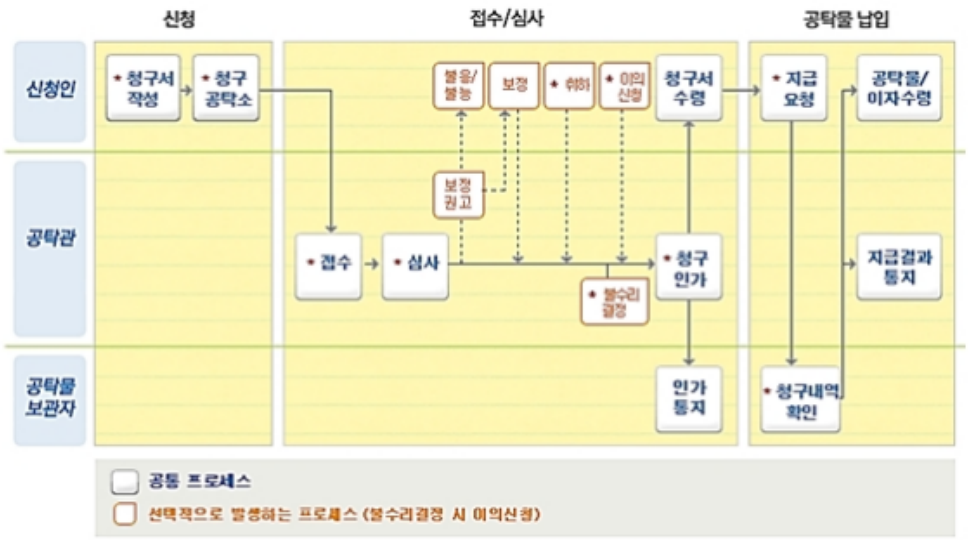
한편, 공탁에 반대급부 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또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

공탁물 출급 및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방문공탁, 전자공탁 공통) >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절차)

※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는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권리공탁·의무공탁)의 공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2. 청구서 작성과 첨부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작성방법

▪ 공탁물 출급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본문 및 제41조제1항·제2항).

- 공탁번호
-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 출급·회수청구사유
-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2조제2항 단서).
- 청구인이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인 경우 그 뜻
-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출급·회수청구의 경우(「공탁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그 서류를 첨부한

뜻

- 공탁법원의 표시
-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 변호사회원 또는 법무사회원이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79조제2항).

▪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회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5조).

>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공탁의 신청-공탁 신청, 심사 및 납입-공탁서 작성 및 제출 > 중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첨부서류

▪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및 제34조).

공탁물 출급청구서 첨부서류	공탁물 회수청구서 첨부서류
1.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음 •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는 제외)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해야 할 때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따라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공탁서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음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 •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2.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1항).

▹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전단).

√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3항 후단).

▹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1조제2항).

▪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2항).

인감증명서 제출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1항).

▹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2항).

※ 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79조제1항).

▪ 다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공탁규칙」 제37조제3항).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회수청구하는 경우로써,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관공서가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자격증명서 첨부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8조제1항).

√ 이 경우 다른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및 제38조제1항).

▪ 출급·회수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함)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가 대리해서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이 위의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8조제3항).

3.2. 공탁물 받기

3.2.1. 지급심사와 결정

공탁관의 지급 심사

공탁관의 심사원칙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1항).

지급 결정 및 통지

출급·회수청구를 수리(受理)하는 경우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에 인가의 뜻을 적어 기명날인하고 전산등록을 한 다음 청구서 1통을 청구인에게 내주고, 공탁물보관자에게는 그 내용을 전송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2항).

▪ 이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9조제3항).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하는 경우

▪ 공탁관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수리 결정서에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1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불수리 결정된 경우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인에게 불수리 결정등본을 내주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불수리 결정등본을 보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8조제2항 및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공탁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 공탁관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2조제1항).

▹ 이의신청을 하려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2조제2항).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1항).

▪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3조제2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항고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4조제1항 후단).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4조제2항).

> ※ 항고(抗告)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상소 및 재심-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절차)-항고 및 재항고(결정·명령 불복)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

판례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않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2.2. 공탁물과 공탁금 이자 수령

공탁물 수령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지급

- 공탁물보관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탁관이 전송한 내용과 대조하여 청구한 공탁물과 그 이자나 이표(利票)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그 청구서에 수령인을 받습니다(「공탁규칙」 제45조).

-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공탁금을 자기의 비용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공탁관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1항).

  - 예금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공탁금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0조제2항).

-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1항).

  -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3조제2항).

공탁물 일부 지급

- 공탁물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인이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인가한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1항).

  - 공탁물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여백에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한 뜻을 적고 수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2조제2항).

공탁금 이자 등 지급

이자율의 계산 등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6조, 「공탁규칙」 제51조 및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

  -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2조 본문).

  -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52조 단서).

-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54조제1항).

▪ 공탁금의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제2항).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53조제2항).

이자 등의 보관

▪ 대법원장이 공탁물 보관자로 지정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합니다(「공탁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 본문).

※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단서 참조).

공탁물품의 매각과 폐기

처리사유 및 절차

▪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11조).

▹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1항).

√ 법원은 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위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2항).

▹ 법원은 공탁물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에 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고, 그 밖에 재판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4항).

▪ 공탁물품의 매각은 「민사집행법」에 따릅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3항 본문).

▹ 다만, 공탁물보관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換價)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3항 단서).

▪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47조제5항).